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 근거 신설〉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7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1415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요청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3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1415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2.
3. 회 부 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현행	개정안
	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 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¹⁾에 따르면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²⁾ 등은 항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호흡기, 정신계, 신경계, 눈 등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법 제40조제3항).

1)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이러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현행 법은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³⁾

【 항공신체검사 기준 예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

검사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2. 호흡기 계통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6. 정신계	나. 항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7. 신경계	가. 뇌전증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발작 또는 이들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나. 중대한 머리의상의 과거병력 또는 머리의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10. 눈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를 직접 실시하면서 파악되는 정보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신청자가 제출한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항공신체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3) 「항공안전법」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과거 병력, 수술 이력 등의 경우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자체문진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이에 항공전문의사가 신청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를 통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에 관한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물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4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① <삭제 2009. 9. 10>

②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및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사유, 최근 검사결과(부적합판정, 취소, 정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에게 본인의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정보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전문의사가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신청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됨.

개정안은 운항승무원의 신체 등 문제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와 같이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의 신체 이상이 항공사고 등 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항승무원 등의 심신 상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병력 허위보고를 방지하는 등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운항승무원의 신체 등 문제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 】

2015. 3. 독일 저먼윙스, 부기장의 우울증과 신체 문제 등으로 인한 여객기 고의 추락 사고⁴⁾
2016. 4. 이스타항공, 조종사 비행 직전(푸켓→인천) 조종석에서 의식불명 및 사망⁵⁾
- 2019.10.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착륙절차 수행 중 의식불명⁶⁾
- 2025.5. 루프트한자, 항공기 운항 중 부기장 의식불명⁷⁾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요청하려는 항공신체검사 관련 정보는 과거 병력, 심신장애 등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⁸⁾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보다 높은 보호의무가 적용되며 개정안의 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⁹⁾의 상당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4) 머니투데이, 「알프스 날던 여객기 의문의 급하강...150명 참사 부기장 짓이었다」, 2024.3..24.

5)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부기장 푸켓서 사망... 출발 전 의식 잃어」, 2016.4.

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준사고조사보고서

7) 매일경제, 「기장 화장실 간 사이 부기장 ‘기절’...200명 태운 여객기 10분간 아찔한 비행」, 2025.5.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

개정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항공안전의 확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조회하도록 함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에서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인 민감정보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오히려 조종사들이 경미한 질환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조차 진료 기피를 유발하여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둘째,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항공의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 권한이 부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령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1년 이내에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의여야 하며,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 등¹⁰⁾ 그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어 항공전문의사가 아닌 자가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 ⑤ 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0. 2. 28.>

교육과목	교육시간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
항공 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항공 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항공 관련법령	4시간	3시간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계	28시간	19시간(매 3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중 진료기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의료법」에 열거된 사유 이외에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인 등은 환자 외에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경우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¹¹⁾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다른 법령에 진료기록 등의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 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후 략)

그 법령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¹²⁾

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중 진료기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의료법」과 상충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 시 「의료법」 제21조제3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¹³⁾ 개정안 수용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¹⁴⁾를 마련하는

12) 법제처 법령해석 15-0373(2015.7.28.)

1. 질의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과거병력 등 심신상태 관련 정보 확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항공신체검사 증명기준의 적합여부 판단은 현행 법령에서 항공전문의사에게 제한적으로 위임한 사무이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공개 또는 누설의 금지 및 개인정보 요청 대상기관 명시 등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의견

조회 대상인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인 민감정보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운항승무원의 민감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

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과의 입법취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오히려 조종사들이 경미한 질환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조차 진료 기피를 유발하여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80